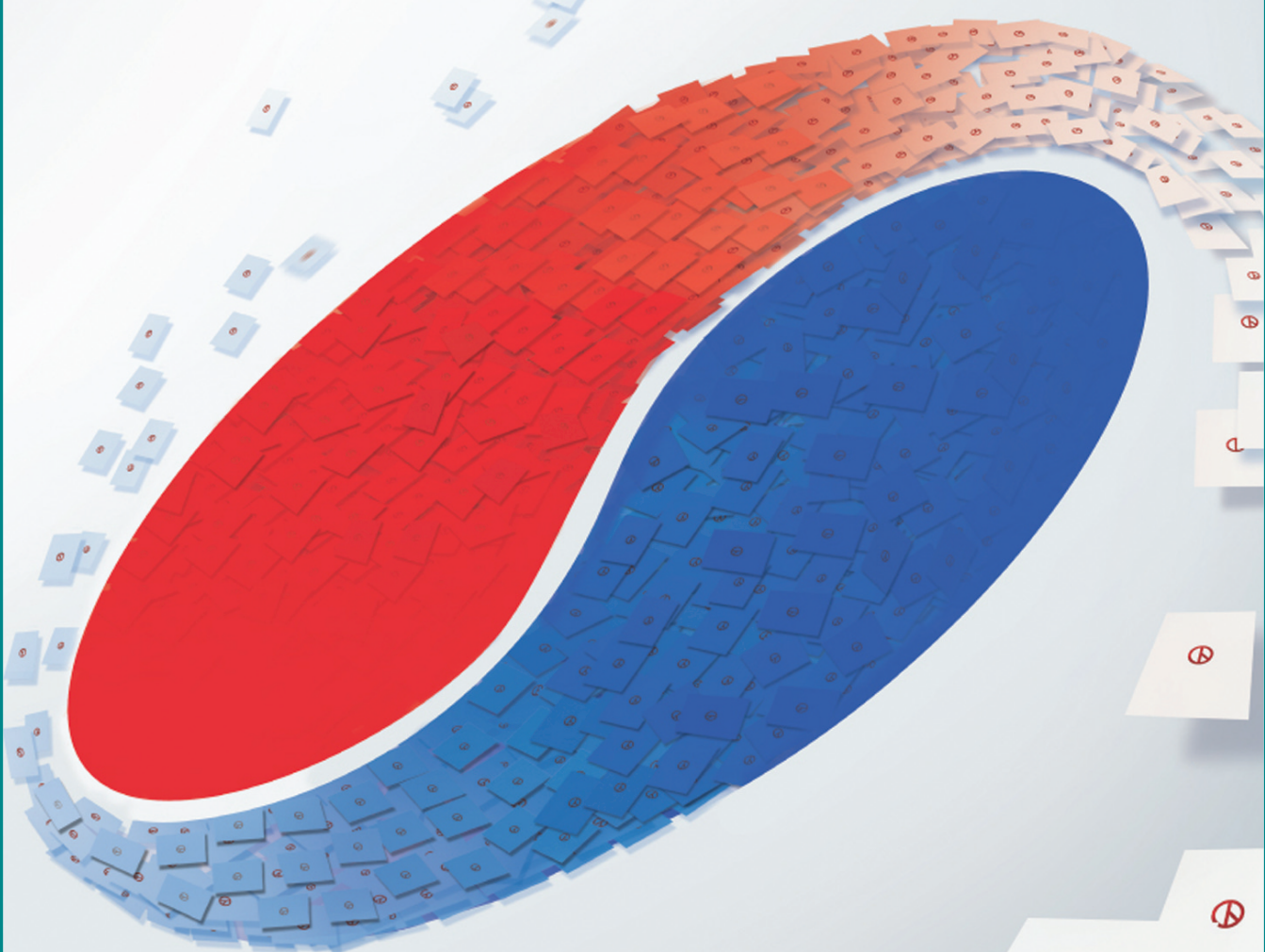


Pride 5.31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 -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나아가 더욱 큰 대한민국을 일구는 일,
바로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5월 31일, 대한민국이 당신의 한 표를 기다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전 화 · 02-503-1114
발행일 · 2006년 5월 15일

선거관리보

www.nec.go.kr

제 59호

» 이번호 게재내용

서 문

3. 5·31 지방선거
정책선거로 이끌겠습니다.
4. 이것만은 알아들으십시오!
5·31 지방선거 주요일정
6. 공직선거법
이번 선거엔 이런 것이 달라졌습니다.
9. 이 곳을 클릭 하면 선거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10. 「참공약 선택하기」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바른정치를 위하여
13.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하여
1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관리관의 역할
16.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
18. 「기표는 꼭 한명만」
19. 6개선거 투표
알고보면 쉽습니다.

홍보포스터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이 관리보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정당, 후보자, 사회·시민·종교단체, 언론 등 여론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 이 관리보는 귀중한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돌려보도록 하여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과 깨끗한 정치구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3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3,867명의 주민대표를 뽑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주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과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천 가능한 것인지, 이를 해결할 능력과 자질은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병역사항, 전과여부 등이 실린 선거공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될 것입니다. TV를 통해 방송연설이나 토론 또한 수시로 볼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느 정당이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십시오.

다음으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득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품과 음식물로 소중한 주권을 사려는 시도 또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불법이 용인되거나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고 선택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참 공약으로堂堂하게 경쟁해야만 선택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선거의 모습도 국력에 걸맞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선거를 떳떳하게 이기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거,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합시다.

5월 31일, 우리의 희망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모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지열

200605 선거관리부

200605 선거관리부

5·31 지방선거 – 정책선거로 이끌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지방정치의 장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기초의원 의 정당공천 허용 등에 따라 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선거사상 최초로 6개 동시선거의 실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께서 소망하시는 깨끗한 선거,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가 이룩되고 나아가 올바른 정치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선거관리방향

▶ 정책선거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돈 선거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편승하려는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연고와 금권이 아닌 정책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많은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후보자는 짜임새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갖추도록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책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남아있는 후진적 선거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내년, 내후년까지 연이어 치러지는 세 차례의 큰 선거를 통해 이 땅에 불법 선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불법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천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등을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참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관심도 덜하고 투표율이 더욱 낮습니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선거를 한 치의 하자도 없도록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기초의원선거에까지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선거사상 처음으로 6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예비후보자제도 도입으로 선거운동이 조기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은 물론 물량 면에서도 역대선거 중 최고일 것으로 보여 선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5·31 지방선거 주요일정

▶ 부재자 신고 : 5월 12일 ~ 5월 16일까지(5일간)

부재자신고대상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읍·면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 5월 16일 ~ 5월 17일(2일간,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 5월 17일 ~ 5월 19일까지(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으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선전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 선전벽보는 5월 22일까지 거리에 붙이게 됩니다
-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5월 26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지난 국회의원선거시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관위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 둘째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게재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투표 : 5월 25일 ~ 5월 26일까지(2일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시에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기표하여 5월 31일 오후 6시 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보내면 됩니다.

▶ 투 표 : 5월 31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는 투표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투표소에 갈 때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선거사무 주요일정

시행 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 일
5.12 ~ 5.16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5.16 ~ 5.17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5.17 ~ 5.19	수~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5.20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5.21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5.22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5.23까지	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5.24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5.25 ~ 5.26	목~금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매일 오전10시 ~ 오후 4시까지)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5.26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후 2일까지
5.31까지	수	투 표(오전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 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6.10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위원회에)	선거일후 10일까지
6.20까지	화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선거일후 20일까지
6.30까지	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 이내
7.30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일후 60일 이내

공직선거법 - 이번 선거엔 이런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도록 하고,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구·시·군의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등 허용

그동안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리유세 선거운동 확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거리유세)시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연설원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모든 선거에서도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세차량 이동 중에도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리지어 인사할 수 있는 인원범위 완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2인(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를 허용하였습니다.

▶ 거리현수막 게시 허용

그동안 금지해왔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일반 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전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신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선거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 이전에 자기 주소지를 떠난 자와 군인이나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에 한정되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철도기관사, 항공사 승무원, 고속버스운전사, 언론기자 등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더라도 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홍보물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로 통합

종전 그 내용이 유사한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선거공보로 통합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활성화

선거방송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초청대상 후보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해서는 아닐 비용에 법에 명시하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기탁금·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전하지 아닐 선거비용 명시

제3자의 차량 무상제공 등으로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닐 비용,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싼 경우 그 초과비용 등 보전해서는 아닐 선거비용에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기탁금·보전비용 환수

공직선거 당선인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외에도 그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의 경우에도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습니다.

▶ 중선거구제 도입

구·시·군의원선거에 하나의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 도입

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사무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그동안 통·리 단위로 해오던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폐지하고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서 제출 범위 조정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내경선 낙선자의 입후보제한

정당의 당내경선(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의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투표관리관제도 도입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폐지에 따라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두도록 하고, 투표관리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위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추천시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회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추천으로 결정하던 것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소속후보자는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읍·면·동단위 개표 허용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는 읍·면·동단위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기간 축소

종전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금지하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축소하여 부재자 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할 수 없도록 축소하였습니다.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 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곳을 클릭하면 선거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는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후보자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인터넷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선거도우미」, 「5·31선거정보조회시스템」, 「정치포털사이트」로 각각 구분하여 유권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1선거정보조회시스템」에서는 선거별·지역별 후보자명부는 물론 후보자 관련 각종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포털사이트」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나무꾸미기코너」는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 후보자에게 바라는 선거공약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내지 공약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선거공약 확인도 가능합니다.

「선거정보」에는 선거주요일정, 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선거구현황, 역대 선거정보를 게시하여 일반유권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후보자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여마당」 등 여러 콘텐츠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6표제의 복잡한 투표절차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플래시 투표절차」와 자신이 투표할 장소를 쉽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투표소 찾기」도 운용 중입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주요 방송·신문사 등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된 「선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 이렇게 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합안내센터에 전화를 통하여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의 선거법 질문·답변코너 활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검색단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자주묻는질문 코너로 이동합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검색 창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검색하면 해당하는 내용이 제목란에 검색되는데 그 제목을 클릭하면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질의 작성하기」란을 이용하면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질의 코너로 이동하여 「민원질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하단 우측부분에 있는 「글쓰기항목을 클릭하여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됩니다. 이 코너를 이용하면 질문자는 메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회답」란에는 각종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질의회답 코너에서는 공식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 주민투표로 구분하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 검색란을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답변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러정보를 작성하여 e-mail로 보내드리는 「e-선거정보」를 받아 보실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e-선거정보 메일링 신청하기」나 공보담당관실(02-503-279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공약 선택하기』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바른정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선거는 겉으로는 금품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등을 이용해 당선되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통합과 주민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지역간·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우리 선거문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금권이나 권력이 받을 불일 수 없어야 하고 연고주의·지역주의도 마땅히 배척되어야함은 물론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하며, 유권자는 연고나 금권이 아닌 정책으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책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확산시키고, 정당·후보자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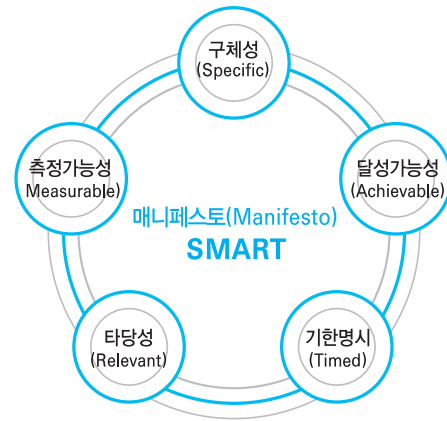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 Manifesto)란?

-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임기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따져서 가

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때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의 5대 지표

- 구체적이고 (Specific)
- 측정 가능하며 (Measurable)
- 달성할 수 있으며 (Achievable)
-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Relevant)
- 시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Timed)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과 소속 정당을 따지고 유권자 자신과의 연고관계에 의존하여 투표하여 왔으며,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믿고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빈틈을 노려 때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5·31 지방선거는 짜임새 있는 정책공약을 갖춘 후보자와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비교하고 따져보는 유권자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할 때입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내 고장의 미래를 구상하는 밑그림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화의 선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바꾸려고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매니페스토에 의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실천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매니페스토운동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하여 정책선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선거 역사 60년, IT강국, 네티즌 3천만명,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있는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매니페스토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Manifesto)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바른 정치를 위하여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주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일부 남아 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 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자연스럽게 몰아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다음 참공약 비교체크리스트(예시)에 의하여

- 후보자의 공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후보자별 공약 작성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SMART 기준	
목표	목표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수치나 비율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지역의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방법	현행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방법입니까?
	지역자원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투입된 비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원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방법이 실현 가능합니까?
기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하여

오늘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획득은 물론 쇼핑, 학습, 여가선용 등 그 활용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실생활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을 정책이나 정견, 공약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방이나 흑색선전·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빠르게 전파하여 유권자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도입취지는 이렇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시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는 1,228건이었으나, 이어 치러진 제16대 대선시에는 11,470건, 2004년도 제17대총선시에는 13,209건으로 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반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하고 신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 짧은 선거기간 중에 이를 치유하기가 어려워 선거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여 바르고 건전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입니다.

실명확인에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종전에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에"로 되어있어 광범위하게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

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한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여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실명확인에는 선거운동기간인 13일 동안에 한합니다.

종전에는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에"로 한정하여 실명확인을 받도록 제한기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만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는 인터넷언론사만 해당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곳은 인터넷언론사만 해당되고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는 실명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 이외의 기술적 조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만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자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 받거나 회원가입시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회원에 한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명확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관리관의 역할

2005년도 8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던 각종 선거사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되면서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두어 투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는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각급위원회 위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사상 최초로 6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투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투표관리관제도가 도입된 후 전국 선거에서는 처음 시행되므로 투표관리관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관리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

- ▶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적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원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위원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 평상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치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거간섭 등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공명선거 정착에 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위원의 대부분은 관할 구역내에 오래 거주하신 마을 어른으로서 이웃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임, 길·휴사, 지역주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만 하셔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 **깨끗하고 바른 선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첫째는 사전예방활동입니다.
- 가족과 친지·이웃 등에 대해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꼭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합니다.
- 본인이 다니는 절이나 성당·교회 등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에도 기회시마다 공명선거 등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합니다.

- 둘째는 신고·제보 및 감시·단속활동입니다.
- 정당·입후보예정자나 그 관련단체·모임의 행사, 산악회·향우회 등 행사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하여 지켜봅니다.
- 생활주변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소속 구·시·군선거관에 즉시 제보합니다.

투표관리관의 역할

▶ **완벽한 투표관리입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종래의 투표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투표용지의 정확한 교부 및 투표소내에서의 질서유지는 물론 투표용지 수령에서부터 투표 종료후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까지 투표 전과정을 관리합니다.

▶ **투표관리관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 **선거기간 전에 할 일**
 - 투표소예정장소 답사 확인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일반인 투표사무원 위촉대상자 확보
- **선거기간 중 할 일**
 - 투표관리교육 참석 및 투표용지 확인
 - 부재자투표소 관리
- **선거일 전일에 할 일**
 - 투표용지 인수 및 수량 확인
 - 투표용지 보관·관리
- **선거일에 할 일**
 - 투표개시전 투표사무관계자 교육
 - 투표소의 투표관리

- 투표마감 및 투표함등 봉쇄·봉인
- 투표함등 개표장 회송 및 선관위 인계

투표관리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 경험, 관례, 타성에 의한 업무처리자세를 지양하고 반드시 관계법규, 편람, 지침, 지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 물의발생은 자만·방심,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되므로 사소한 업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투표관리 전 과정을 그때마다 재확인·점검합니다.
- 편견·혈연·지연 등에 얽매이거나 망설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되, 상호 감정대립이 유발되지 않도록 특히 언행에 유의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합법성·공정성에 입각하여 처리합니다. ▶

5.31은 Beautiful Day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

선거법위반행위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적발된 공천현금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더욱 지능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거법위반행위를 근절시키고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반면에 현행 선거법은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는 형사처벌하되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녀회 등 각종 모임이나 정당·후보자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여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아 그 대가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인지하게 되면 적극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금제도

●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는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현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동원 선거범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는 5천만원까지,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인쇄물배부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그 행위별로 구분하여 200만원까지로 종전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제보사항이 고발·수사의뢰의 결정적 단서가 될 때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게 되어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을 말합니다.

●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과태료 50배 부과제도

● 선거법상 과태료제도는 이렇습니다.

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도 형사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적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시부터 과태료 50배 부과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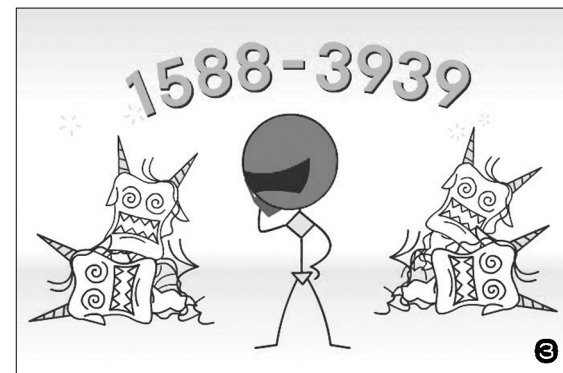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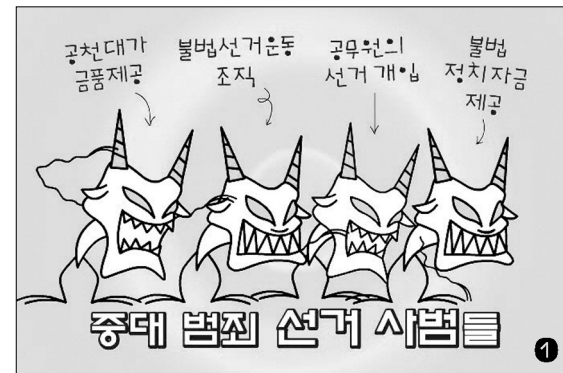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등으로부터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그 배우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와 위의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와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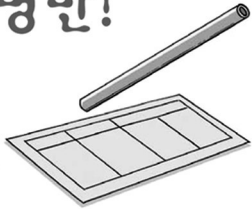
● 과태료는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되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금전, 음식물 또는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되 상한액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신고 포상금 홍보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서

기표는 꼭, 한 명만!



김형배

에... 오늘은 5.31 지방선거를 하는 날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시추에이션 점검 및 사전 미팅으로 약간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왜...시추에이션?

미팅이라고...?

어쩌나, 난 아직 화장도 안했는데.

할머니도 주책이셔!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아시는 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6장입니다!

에, 이 도표에서 보듯 여섯 가지 색깔로 투표용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연두색	구·시·군의장 선거
	연미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계란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광역 자치단체	흰 색	시·도지사 선거
	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질문이 하나 있다 아들이!

웁니까, 아버지?

여기 기초 비례대표 구·시·군 및 광역자치단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옆 기표란에 찍으시면 됩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데...

그럼... 투표용지 한 장에 여러 명을 기표해도 되나?

오우, 노!

이 부분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곳인데.

모든 투표용지에는 각 한 명씩만 찍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한 명만 찍여야지 두 명이상을 찍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니냐!

빙고!

할머니 이제 좋아하시는 후보와 투표로 미팅하러 가셔도 됩니다!

호호호 - 나만 가서 되겠냐, 온 가족이 모두 다 가야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588-3939

김형배
●1980년 일본 요미우리신문 주최 제1회 국제만화대상전 입상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회장 역임
●대표작 「20세기 기사단」, 「할로렐로」 「기(氣)는 과학이다」, 「황색탄환」 「복색의 정훈」 외 다수

6개선거 투표 - 알고보면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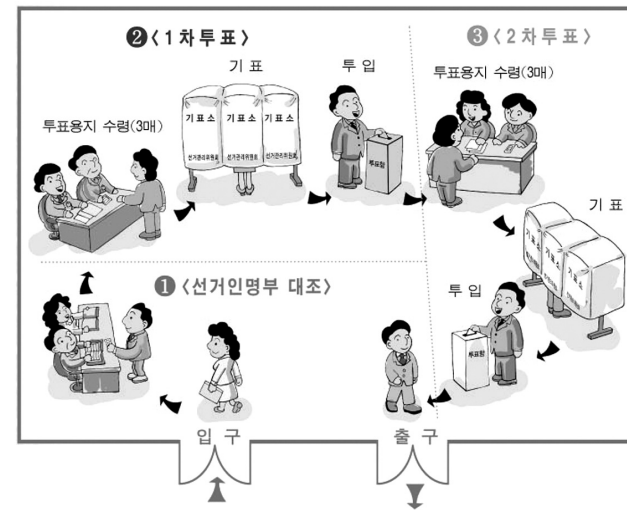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는 6개 선거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② 1차로 투표용지 3매(구청장·시장·군수/비례대표구·시·군의원/지역구구·시·군의원)를 교부받아 기표하여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합니다.
- ③ 2차로 투표용지 3매(시·도지사/비례대표시·도의원/지역구시·도의원)를 교부받아 기표하여 백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오면 됩니다.

1차 투표		
구청장 시장·군수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연두색〉	〈연미색〉 (흰노랑)	〈계란색〉

2차 투표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백색〉	〈청회색〉	〈하늘색〉

투표진행순서



다음과 같이 투표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여러명을 뽑더라도 반드시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것.
- 기표(☉표)를 하지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표)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이번 선거에서는 인주 없이 바로 찍을 수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합니다.

